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00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2.
- (3) 회 부 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자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자재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4조의2(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자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자재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u>제14조</u> 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의 기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구비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략)	제25조(시정조치) ① ----- ----- ----- ----- -----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발주자의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¹⁾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²⁾하도록 함. 이에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는 ‘하도금지킴이’, 서울시에서는 ‘대금e바로’등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에 적용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에 적용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 민간에서도 20억 이상의 공사위주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노무비닷컴, 김반장이콘,페이컴스 등이 사용되고 있음. 또한 발주자·건설사업자 대상 설문에 따르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대금·임금 체불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공사 규모별 대금지급시스템 도입현황>

비고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공공	미도입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		
민간	미도입	도입저조	도입증가	대기업 자발적 이용 많음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민간공사에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임금 체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위탁 뿐만 아니라 제조위탁·수리위탁·용역위탁⁴⁾의 경우에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각종 하도급거래의 수급사업자 및 근로자, 자재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건설산업정보센터(국토부산하), 「민간현장 체불방지 강화방안연구」 용역보고서, 2021.6.; 76

4)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분야별·하도급 거래 계약 금액별 업체 수 현황>

구분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제조	3,526개	1,471개	3,877개	964개	582개
건설	100개	90개	428개	2,188개	236개
용역	1,444개	492개	756개	222개	95개

※ KOSIS, 하도급거래실태조사, 제조·건설·용역 수급사업자-하도급거래 기본사항-하도급 거래 행태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중소기업의 민간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행정업무 증가, 운용인력 부족 및 수수료 비용 부담 증가, 회전자금 감소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이 활발하지 않은 현실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의무를 개별 발주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발주자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시스템 이용·활용 방법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여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형태와 기능을 통합하여 표준화된 통합시스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⁶⁾가 있음.
- 셋째, 민간공사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전자적 대금지급

5) 건설산업정보센터(국토부산하), 「민간현장 체불방지 강화방안연구」 용역보고서, 2021.6.; 189

6) 김종근·김현성. 효과적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영향요인에 관한 사례분석적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023, 28.2: 23-50.

시스템 사용 권장 정책을 시행한 후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⁷⁾ 및 민간발주 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

7) 대한건설협회 의견

8) 대한전문건설협회 의견